

2022년 복지지원 주요 변경사항

구분	내용
대부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자금」 대부한도 확대 : 7천만원 → 1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경우 한도금액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- 최대 상환기간 연장 : 10년 → 12년 * 희망자 限, 거치기간 1년 부여 · 단, 정년퇴직 잔여기간 내 상환기간 신청 • 「금융기관 이자지원」 한도 확대 : 3천만원 → 1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, 최대 5년간 연리 1.5% 지원 - 제1금융권 신규 대부 외 기존 대부도 지원(유동성 한도대출, 마이너스통장 제외) <p>※ 「가계안정자금」, 「긴급가계자금」 대부금은 「주택자금」 대부한도 확대 재원으로 활용</p>
자기계발비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액 : 연 10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1.1 ~12.20까지 승인시 지급, 당해년도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• 지원방법 : 월 1회(매월 말일), 별도계좌 입금
의료비 지원 (급여항목 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방식 변경 : 직접 신청 → 자동지원(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비 자료제공 사전 동의 필수(별도 안내). 미동의자는 직접 신청 • 지급주기 : 분기 1회(분기마감 후 익월말 지급) * 1분기 진료비 5월말 지급 • 지원금액 : 분기 최소공제액(6만원) 초과분 <p>※ 비급여항목은 기존과 동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MRI·CT·초음파 100% 지원(월 1회), 직접 신청, 최소 공제액 없음
태아/어린이 보험 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임신(배우자 포함) 또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(자녀수 제한 無) • 담보 : 상해/질병입원일당, 수술위로금,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이용일당 등 • 가입방법 : 인사정보 활용 일괄 가입, 추가자녀 월 단위 자동가입 • 효력개시일 : 2022.1.1~
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限) • 지원금액 : 월 20만원(자녀당) • 신청방법 : 장애인등록증 첨부하여 ERP신청(최초 지원신청 시) • 지원방법 : 월 1회(매월 말일), 별도계좌 입금 * 신청 월부터 지급